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영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101

발의연월일: 2024. 9. 20.

발 의 자:김영배·조 국·김태년

조인철 • 문금주 • 문정복

이병진 · 송기헌 · 이기헌

조정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북한 간 공유하는 물이 민족 공동의 자산임을 인식하고, 남북한 공유하천의 공동관리를 포함하는 물관리 부문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남북 공동으로 수자원을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실에서 보다 실질적인 정책을 추 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함.

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북한 물관리 부문 협력체계 구축을 증진하기 위하여 남북한 공유하천 관리시책의 수립과 시행, 남북한 공 유하천 위기대응 체계 구축, 북한 수자원의 정기적인 조사 및 분석체 계 구축, 남북한 공유하천 공동관리를 위한 국제기구,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현행법을 정비하려는 것임(안 제37 조).

법률 제 호

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물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7조(남북한 간 물관리 협력체계 구축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남북한 물관리 부문 협력체계 구축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- 1. 남북한 공유하천 관리시책의 수립 및 시행
- 2. 남북 간 연락망 등 남북한 공유하천 위기대응 체계 구축
- 3. 북한 수자원의 정기적인 조사 및 분석체계 구축
- 4. 남북한 공유하천 공동관리를 위한 국제기구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
- ② 제1항에 따른 남북한 공유하천 관리시책의 수립·시행, 위기대응체계 구축, 북한 수자원 조사의 범위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제37조(남북한 간 물관리 협력) 제37조(남북한 간 물관리 협력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북한 계 구축) ① 국가와 지방자치 간 공유하는 물이 민족 공동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남북한 자산임을 인식하고, 남북한 공 물관리 부문 협력체계 구축을 유 하천의 공동관리를 포함하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는 물관리 부문의 상호 교류 한다.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 1. 남북한 공유하천 관리시책의 력하여야 한다. 수립 및 시행 2. 남북 간 연락망 등 남북한 공유하천 위기대응 체계 구축 3. 북한 수자원의 정기적인 조 사 및 분석체계 구축 4. 남북한 공유하천 공동관리를 위한 국제기구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② 제1항에 따른 남북한 공유 하천 관리시책의 수립·시행, 위기대응 체계 구축, 북한 수자 원 조사의 범위 · 방법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.